

##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약정서

### Payer ID Service Agreement

\_\_\_\_\_ (이하 "갑"이라 한다.)과 (주)한국씨티은행 (이하 "을"이라 한다.)은 "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계약"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.

#### 제 1 조 (목 적)

이 계약은 "갑"과 "을"간의 "가상계좌를 이용한 자금관리서비스"(이하 "가상계좌서비스" 라 한다)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"가상계좌"라 함은 제휴기관(기업 또는 금융기관)의 집금 업무를 지원하는 가상의 계좌로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제휴기관이 고객들의 구매대금(또는 이용수수료)을 수납하는 경우 고객별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집금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계좌를 말한다.
- ② "입금수수료"는 "갑"의 고객이 "을"의 인터넷뱅킹, PC BANKING, CD/ATM, 창구등을 이용하여 입금하는 경우와 타행환(CD 공동망 포함)을 이용하여 타행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③ "계좌발급수수료"는 "을"이 "갑"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- ④ "계좌미사용수수료"는 "갑"이 가상계좌를 일괄로 부여 받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수수료로서, 사용하지 아니한 가상계좌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 년 단위로 "을"의 전산원장관리 보전수수료의 개념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
- ⑤ "일괄부여"는 "갑"의 고객에게 발급할 가상계좌의 전부를 "갑"에게 일시에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 "건별부여"는 "갑"의 고객에게 발급할 가상계좌 중에서 "갑"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건건이 "을"이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⑦ SMS(Short Message Service)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각종 정보를 "갑" 이 지정하는 자의 이동전화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

#### 제 3 조 (업무의 범위)

이 계약에 의해 "을"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입금서비스 : "갑"이 고객에게 부여한 "갑"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"갑"이 지정한 입금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
- ② 조회서비스 : 거래명세조회 등의 각종 조회 및 "갑"에 대한 전송업무

#### 제 4 조 (업무처리시간)

제 3 조의 업무처리 시간은 "을"의 대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. 다만 "을"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"갑"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 (계좌의 지정)

- ① "갑"은 "을"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"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추가약정서"(이하 "추가약정서")에 입금모계좌(이하 "모계좌"라 한다.)와 수수료인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"갑"은 제 1 항의 모계좌와 수수료인출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"을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"을"의 전산담당 부서에서 변경내용의 전산등록을 마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#### 제 6 조 (입금업무 처리)

- ① "을"은 "갑"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통보에 의한 요청이 없는 한 "갑"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"갑"이 미리 정한 모계좌로 당일 중 이체하기로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는 상호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"갑"에게 전송한다. 이 거래명세의 전달과 관련하여 "을"은 필요한 경우 또는 "갑"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이트뱅크와 같은 제 3 자회사와의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고, "갑"은 이에 동의한다.
- ③ "갑"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 완료된 후에 모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.
- ④ "을"이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"갑"의 해당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, 차감잔액이 부족한 경우 "갑"은 지체없이 부족 금액을 당일중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#### 제 7 조 (입금처리의 예외)

"을"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"갑"에게 통보 후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.

- ①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일정기간 미사용 등 이유로 거래중지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
- ②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압류 등 법적 사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

#### 제 8 조 (모계좌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처리)

"갑"의 요구에 의하여 "을"이 모계좌에 대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당일 전일까지의 모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한다.

#### 제 9 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"갑"과 "을"은 가상계좌의 거래내용은 제 6 조에 따라 상호 정한 방법에 의한 전송된 자료로 확인하며,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, 교부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 1 항에 의한 거래내용 확인과 관련하여, "을" 이외의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거래 내용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며, 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송내용과 "을"의 가상계좌에 실제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"갑"에게 별도 통지한다.

#### 제 10 조 (거래의 취소)

"을"이 모계좌로 입금처리한 업무에 "을"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, "갑"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
#### 제 11 조 (SMS 서비스)

- ① "갑"은 SM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, 이동전화 정보 등을 "을"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받을 이동전화 기타 무선통신단말기의 번호 변경 또는 해지 등의 변동내역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의 지연 및 미처리로 인한 피해는 "갑"의 책임으로 한다.

- ③ "갑"이 입력한 이동전화 정보 등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"갑"의 책임으로 한다.

**제 12 조 (가상계좌 부여방법 및 수수료)**

- ① 본 조의 가상계좌 부여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 추가약정서에 정한다.
- ② "입금수수료" 는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**익월 10 일**(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"갑"의 수수료인출계좌에서 **별도의 자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 인출한다.**
- ③ "계좌발급수수료"는 "갑"의 선택에 따라 일괄부여방식의 경우에는 최초 입출금거래 발생시, 건별 부여 방식의 경우에는 건별 발급시 각각 수수료인출계좌에서 자동 징수한다
- ④ "계좌 미사용수수료"는 계약일로부터 1 년 단위로 해당되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 일(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"갑"의 수수료인출 지정계좌에서 **별도의 자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 인출한다.**

**제 13 조 (전산운용)**

- ①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좌명세의 전송 등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이 필요한 경우 "갑"과 "을"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전산시스템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또는 전용회선을 상호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"갑"은 "을" 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.
- ③ 제 2 항에서 전용회선으로 운영하는 경우 "갑"은 "을"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전용회선을 설치,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"갑"의 부담으로 한다.

**제 14 조 (기밀유지)**

"갑"과 "을"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 제 6 조 제 2 항 또는 제 13 조에 따라 "을"이 제 3 자에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"갑"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. 이 경우에도 "갑"은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 15 조 (책임범위)**

가상계좌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 16 조 (효력의 발생)**

이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1 년간 유효하다.

**제 17 조 (해지 및 연장)**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
  - 2.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경우
  - 3. "갑"이 서비스 수수료를 연체한 경우
  - 4 제 1 항 제 2 호, 제 3 호에 의거,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1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당사자가 계약 만료 1 개월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통지를 상대방에 하지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.

단, 추가약정서의 부분은 계약이 갱신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일방으로부터 조건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**제 18 조 (준용사항)**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을”의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준용하며, “을”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 공동망(CD공동망 포함)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.

**제 19 조 (기 타)**

-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이 계약업무 진행 중에 감독기관(유관기관 포함)의 관련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 20 조 (추가약정서의 체결)**

“갑”과 “을”은 모계좌의 지정,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일부인 추가약정 서를 체결하기로 한다.

**제 21 조 (합의관할)**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“갑 ”

“을”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     지점  
지점장

#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약정서 신· 구 대비표

| 개정전  | 개정후   |
|--|---|
| <p><b>제 12 조 (가상계좌 부여방법 및 수수료)</b></p> <p>④ 본 조의 가상계좌 부여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 추가약정서에 정한다. “을”이 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“을”은 시행일 1 개월 전에 “갑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“갑”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전 1 주일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보 하기로 한다. 시행일 전 1 주일까지 갑의 이의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“입금수수료” 는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<b>익월 10 일</b>(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“갑”의 수수료인출계좌에서 별도의 자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 인출한다.</p> <p>③ “계좌발급수수료”는 “갑”의 선택에 따라 일괄부여방식의 경우에는 최초 입출금거래 발생시, 건별 부여 방식의 경우에는 건별 발급시 각각 수수료인출계좌에서 자동 징수한다</p> <p>④ “계좌 미사용수수료”는 계약일로부터 1 년 단위로 해당되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 일(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에 “갑”의 수수료인출 지정계좌에서 별도의 자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 인출한다.</p> | <p><b>제 12 조 (가상계좌 부여방법 및 수수료)</b></p> <p>① 본 조의 가상계좌 부여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 추가약정서에 정한다.</p> <p>② 좌동</p> <p>③ 좌동</p> <p>④ 좌동</p> |

1. 시행일 : 2022 년 04 월 25 일

2. 기존가입고객 적용 여부 : 여